

2020년도 제1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7. 30.(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심장섭,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4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59건(안건번호 제2020-82678호~8395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82678호, 82679호는 민원인 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미지를 다른 판매자가 동일 제품 판매를 위해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민원인이 저작물의 권리자라고 보기에 불명확한 점, 문제가 되는 제품 이미지의 저작물성 인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심의위원별로 부결 이유가 상이함).

안건번호 제2020-82680호~8268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설,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안건번호 제2020-82686호 게시물은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64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4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여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드렸음.
전차회의록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부터 8쪽까지 게재된 저작물명, 채널명 11쪽에 노출된 밴드명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저작물명, 채널명, 밴드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D 위원, C 위원: 같은 생각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채널명, 밴드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NTV’, ‘미국 NBC’, ‘(주)레진스튜디오’, ‘(주)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넷플릭스’, ‘일본 후지TV’, ‘미국 FOX’, ‘채널A’,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월트디즈니컴퍼니’, ‘TV조선’, ‘tvN’, ‘유니버설 픽처스’, ‘키다리아엔티’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D 위원, C 위원, B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65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0-82678호~83955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2678 호~8267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민원인 회사 '☆☆☆☆☆☆☆☆'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미지를 다른 판매자가 동일 제품 판매를 위해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임.

(민원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 ☆☆ ☆☆☆☆☆ ☆ ☆☆☆☆☆ ☆☆☆☆☆ ☆☆☆☆☆☆☆. ☆☆ ☆ ☆☆☆☆☆ ☆☆☆☆☆ ☆☆☆ ☆☆☆☆☆ ☆☆☆☆☆☆☆ ☆☆☆ ☆☆☆☆☆ ☆☆☆☆☆ ☆ ☆☆☆ ☆☆☆ ☆☆☆ ☆☆☆ ☆☆☆ ☆☆☆☆☆☆☆."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민원인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상품 상세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의 원본 파일, 대표 이미지 원본 파일, 회사 명함 등을 제출하였음.

(민원인이 제출한 이미지 자료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이 제출한 원본 이미지 자료임. 제품을 설명하는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기능적 성격이 강함.

- C 위원: 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을 말하는 건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저작권 등록과는 상관이 없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제조국은 한국이며, 화장품제조업자는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대전에 위치한 '☆☆☆☆'임. 민원인 회사가 '☆☆☆☆'임. '☆☆☆☆'은 판매자인데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게시물들이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D 위원: 만약 민원인이 수입업체라면 이미지 무단이용에 관해 저작

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해당 안건의 경우 제조사가 타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미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권리를 판매한 것은 아닌지?

- B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추가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제품 판매 권한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별개인 것이 맞음.
- C 위원: 민원인이 제조사가 아니라 판매사인데 통상적으로 홍보 이미지를 제조사에서 만드는 것인지 판매사에서 만드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판매사인 민원인이 본 건의 제품 이미지를 제작한 것 같음.
- C 위원: 민원인은 자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다른 판매자가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는데, 관례에 비추어 판매자가 홍보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재판매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이 유통되고 나면 화장품 자체는 누구나 판매할 수 있을 것임.
- C 위원: 그런데 판매하기 위해서 브로셔를 만들거나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제품 판매를 떠나서 별개의 저작권이 발생 될 수 있을 것임.

- D 위원: 홍보 이미지의 이용도 유통사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도 판매사가 아니라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음.
- C 위원: 제품 자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종의 브로셔를 만든 것이므로 제조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됨. 만약 판매사가 브로셔를 만들었다면 이미지 저작물을 창작하였기 때문에 판매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판매사가 해당 이미지에 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이미지 저작물의 경우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음. 업무상 저작물로서 민원인 회사의 직원이 직접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외부업체나 프리랜서가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후자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것임. 그 부분까지는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음.
(민원인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이미지와 타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이미지 비교 목록을 제시하면서)왼쪽은 민원인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이미지이고 오른쪽은 '☆☆☆☆'와 '☆☆'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이미지임. '☆☆☆☆'와 '☆☆'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이미지가 오늘 심의할 심의대상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 이미지 중 일부는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본 건 제품 이미지는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이미지의 합법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82678호, 8267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민원인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이미지 중 제품을 촬영한 이미지는 저작물성이 있는 이미지에 가깝다고 보임. 독창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이미지가 아니라 제품을 가운데에 두고 그림자와 사물 등을 배치하는 등 제품을 부각시키는 촬영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임. 해당 이미지의 경우 저작물성이 있다고 생각함.

또한,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미지의 저작권자는 다른 판매 업체에 이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 '☆☆' 사이트 판매자가 다른 이미지를 이용하면 되므로 시정권고로 인해 해당 이미지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행정조치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게시물이 내려가게 됨. 그렇게 되면 가처분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됨.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됨.
- D 위원: 출판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교육 자재를 제작한 경험이 있음. 저작권은 출판사가 소유하고 홍보대행사에 홍보를 일임하였는데 해당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어떤 사이트에 홍보를 해도 상관이 없음. 판매가 이루어지고 수익만 배분되면 되기 때문임.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이미지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다만, 나머지 이미지의 경우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토보고서에 '일부'라고 명시함.
- D 위원: 이미지의 퀄리티가 높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음.
- C 위원: 본인의 실제 모습과 동일하게 촬영한 여권 사진의 경우 사

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그러나 촬영자의 창작성이 들어간 초상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될 것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환부 모습 사진 또한, 식별을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임.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의 구도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임. 그 외의 경우는 저작물이 인정된다고 볼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 중에 손을 이용하여 비포 앤 에프터 사진을 찍은 경우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D 위원: 해당 손이 직업 모델의 손일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지?
- C 위원: 직업 모델 여부는 상관없음. 다만 보습 정도를 표현한 이미지의 경우 촉촉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해 저작자의 창작성이 충분히 가미될 수 있을 것임. 그래서 위의 이미지를 놓고 보면 일부 저작물성이 있고 일부는 저작물성이 없을 것임. 저작물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이미지가 포함되었을지라도 문제가 됨.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진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됨. 단지, 신고는 민원인이 했을지라도 누가 저작권을 갖는지 불명확 점이 있음.
- A 위원: 창작성을 문제 삼는 검토보고서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움. 해당 사안의 핵심은 '☆☆☆☆', '☆☆' 사이트의 판매자들 혹은 게시자들이 적법한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결 의견임.
- C 위원: 민원인은 제품 이미지 전체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이미지

의 분량을 미루어볼 때 민원인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나 '☆☆'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다만, 이미지의 저작물성 여부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서술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민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부결 의견이지만, 저작물성이 없으므로 부결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려움.

- 성원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마켓의 제품 이미지가 문제된 사례들에서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축적된 논리임. 제품 이미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임.
- C 위원: 이전의 심의위원들에 의해 정립된 논리라면,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B 위원: 광고의 마지막에 제품의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민원인인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화장품법 제2조에서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책임판매업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품질검사 등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함.

- B 위원: 그렇다면 '☆☆☆☆' 혹은 '☆☆'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자는 책임판매업자가 아닌지?
- 성원영 전문위원: '☆☆'과 '☆☆☆☆'에 입점한 판매자는 책임판매업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B 위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아니면化妆품을 팔 수 없는 건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하였음.
- B 위원: 3개의 사업자가 각각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해당 화장품의 제품생산업자는 1개임. 지금 사이트에 검색한 결과 제품생산업자가 일부 제품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하고 있음. 해당 이미지를 누가 제작했는지 알 수 없음. 결론적으로 부결 의견임.
- C 위원: 제조업자가 해당 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매업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판매업자가 만들었을 수도 있음.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제조업자가 만들어서 배포한 거라면, 이러한 민원이 제기될 수 없다고 봄.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가 독점판매업자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업자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임.
- B 위원: 민원인은 독점판매업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C 위원: 제조사가 책임판매업자를 여러 군데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성원영 전문위원: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를 보충 설명해드리자면,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민원인의 회사가 정당한 저작권자임이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 쇼핑몰의 제품 판매 게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개입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가 상업적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 구조가 아니어서 쌍방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저작권 외에 다른 법적 쟁점도 있을 수 있음. 쇼핑몰 게시물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저는 기존의 심의위원회 의견과 다른 의견임. 심의위원회가 제품 판매에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됨. 민원인이 제출한 이미지의 불법복제물이 배포되는 사실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임. 물론 결과적으로 제품 판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제품 판매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님.
- D 위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확실한 사실임.
- C 위원: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상품화되었을 경우 저작권에 관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제품 사진이 지금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거래되고 있음. 시정권고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됨.
- C 위원: 전문위원의 말씀대로라면 가령 책의 표지에 저작권 분쟁이 있는 채로 서점에 배포되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을 자제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C 위원: 시정권고가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규율된 바가 없다고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제도 취지에 근거하여 말씀드린 것임.
- C 위원: 설사 입법 취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문언에 표시된 게 우선해야 할 것임.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합목적성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관해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품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임. 하지만 해당 논리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았고, 부결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E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음. 또한, 제가 한달 정도 전에 유사 안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지적한 바가 있으나 수정되지 아니함. 이 사안은 부

결, 가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과정에 이르는데 하자가 있다는 생각에서,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자는 C 위원님의 의견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 C 위원: 꼭 전체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기보다는 광고 이미지에 관한 기존 심의위원회의 논리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임.
- A 위원: 그럼 전체위원회로 상정하자는 의견은 아니신지?
- C 위원: 전체위원회로 상정하여 논의를 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음.
- D 위원: 그럼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 C 위원: 해당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광고 이미지에 대해서 기존 심의위원회의 논리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A 위원: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렇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논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건 어떠하신지? 시정권고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 이 부분을 논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C 위원: 박성호 위원장님께서 전체위원회의 논의안건 상정 여부를

정하시는데 것으로 알고 있음. 광고 이미지에 대하여 기존 심의위원회의 논리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제 생각을 위원장님께 전달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82678호, 8267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다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민원인이 저작물의 권리자라고 보기에 불명확한 점, 문제가 되는 제품 이미지의 저작물성 인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박성호 위원장님께 논의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의논하도록 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82680호~82688호는 실명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서 소설 '☆☆☆☆ ☆☆☆☆☆☆☆', 만화 '☆☆☆☆ ☆☆☆☆, ☆☆☆☆☆ ☆☆☆ ☆☆☆', '☆☆ ☆☆☆', '☆☆☆ ☆☆☆ ☆', '☆☆☆☆ ☆☆☆ ☆☆☆', '☆☆☆☆ ☆☆☆', '☆☆☆☆ ☆☆☆☆☆', '☆☆☆☆ ☆☆☆', '☆☆☆☆ ☆☆☆☆☆'를 각 20~9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다만 안전번호 제2020-82686호 게시물은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음. (안전번호 제2020-82686호 URL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해본 결과 "삭제되었거나 정상 콘텐츠가 아닙니다"라는 안내 팝업창이 뜬.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82680호~8268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안전번호 제2020-82686호 게시물은 현재 전송중단 상태이므로 부결 의견임.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 A 위원: 이의 없음.
- C 위원: 같은 생각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82680호~82688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다만 안전번호 제2020-82686호 게시물은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임.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2689호~8395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결백'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282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결백'을 21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신혜선, 배종옥이 출연한 영화로 누적관객이 86만명을 넘음.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한 영화임.

(영화 '초미의 관심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82880호는 영화 '초미의 관심사'를 웹하드에서 179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5. 27. 개봉하였으며, '네이버 시리즈on'에서 구매하는 경우 9,900원, 대여하는 경우 4,500원에 이용 가능함.

(영화 '밤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2912호는 영화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화 '밤샐'을 212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폭스 뉴스 채널의 여직원과 창립자 로저 에일스 관련 사건인 폭스 뉴스의 성 스캔들을 각색한 영화임. 2020. 7. 8. 개봉하였고 현재 상영 중임. 샤를리즈 테론, 니콜 키드먼, 마고 로비 등이 출연함. 최근 불법복제물로 많이 발견되는 영화임.

(영화 '소리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2913호는 영화 '소리꾼'을 웹하드에서 158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7. 1. 개봉하여 현재 상영 중임. 김동완과 이유리가 출연한 영화임.

(방송 '바람과 구름과 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83321호는 웹하드에서 방송 '바람과 구름과 비' 16회~17회를 1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은 'TV조선'에서 방영 중이며 이병주 작가의 '바람과 구름과 비'소설을 드라마화한 작품임. 박시후, 고성희, 전광렬 등이 출연하였으며 총 21부작 드라마로 2020. 7. 26. 종영되었음.

(영화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3810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를 판매한 사안임. 2020. 6. 10. 개봉하였고 다코타 존슨, 트레시 엘리스 로스 등이 출연을 하였고 '어바웃 타임' 제작진이 연출하였음.

- D 위원, A 위원, C 위원,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82689호~83955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82689호~8395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82678호~82679호, 제2020-82686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82680호~82685호, 제2020-82687호~8395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8. 6.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최현용